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538346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B

변론 종결 2016. 8. 25.

판결 선고 2016. 9.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73,429원 및 그중, 19,462,441원에 대하여는 2015.11. 10.부터, 42,906,844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각 2016. 7. 12.까지는 연12%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C에 대한 부분은 취하됨).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이성진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 법인입니다.

나.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A (이하 '피고1'이라 합니다)는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고 기금의 보증을 받아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1'이라 합니다) 및 소외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은행2'라 합니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은 뒤 동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이고,

(2) 피고 B (이하 '피고2'라 합니다)은 피고1이 원고 기금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이며,

(3) 피고 C (이하 '피고3'이라 합니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피고1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입니다.

2. 구상금 청구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 (1) 원고는 피고2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2가 소외 은행들로부터 만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보증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및 2, 각 신용보증서).

보증일자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 고
2010.09.10.	소외 은행1	D	2011.09.09.	22,400,000원 (28,000,000원)	이하 '보증'이라 합니다
2011.03.16.	소외 은행2	E	2012.03.16.	42,500,000원 (50,000,000원)	이하 '보증2'라 합니다

- (2) 이후, 피보증인의 상호가 F에서 G로, 대표자(주채무자)가 피고2에서 피고1로 각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14. 3. 14. 피고1을 주채무자, 피고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다시 체결하고(갑 제2호증의 1 및 2, 각 신용보증약정서), 아래와 같이 소외 은행들에게 피보증인의 변경통지를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및 2,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구분	채권자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비 고
보증1	소외 은행1	D	2014.09.05.	19,200,000원 (24,000,000원)	
보증2	소외 은행2	E	2014.03.14.	42,500,000원 (50,000,000원)	

이후, 보증조건변경을 통하여 보증1 관련 보증기한이 2015. 9. 4.로, 보증2 관련 보증기한이 2016. 3. 11.로 각 최종 변경되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각 신용보증조건변경통지서).

- (3)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1이 원고 기금의 보증에 의한 주채무인

대출금을 변제기한(이자원체화 기한이익의 상실 포함)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채권자인 소외 은행들로부터 보증채무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피고1 및 피고2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 당일부터 원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세당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

피고1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 2015. 9. 5. 보증1 관련 대출금에 대하여 원금연체로, 2015. 10. 6. 보증2 관련 대출금에 대하여 휴업을 사유로 각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였고(갑 제5호증의 1 및 2, 각 신용보증사고통지서), 원고는 소외 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11. 10. 소외 은행1에게 보증1과 관련하여 19,462,441원을, 2015. 11. 12. 소외 은행2에게 보증2와 관련하여 42,906,84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및 2, 각 대위변제증서), 위 대위변제금은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7호증의 1 및 2, 각 구상채권원장).

다. 지연손해금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대위변제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5. 11. 10. 및 2015. 11. 12부터 각

현재까지 연 12%입니다(갑 제8호증, 손해금을 변경).

라. 미수 추가보증료

피고1 및 피고2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보증료를 부담하는 바, 보증1과 관련하여 72,900원의 추가보증료가 발생하였습니다(갑 제7호증의 1 참조).

마. 법적절차비용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572,520원을 지출하고 그 중 241,276원을 회수하여 현재 331,244원이 남아 있습니다(갑 제9호증, 대지급금원장).

바. 소 결

그렇다면, 피고1은 및 피고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773,429원(보증1 관련 대위변제금 19,462,441원 + 보증2 관련 대위변제금 42,906,844원 + 추가보증료 72,900원 + 법적절차비용 331,244원) 및 그 중 보증1 관련 대위변제금 19,462,441원에 대하여는 2015. 11. 10.부터, 보증2 관련 대위변제금 42,906,844원에 대하여는 2015. 11.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원고 소정의 연 12%, 그 다음날부터 원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의 청구

가. 사해행위

(1) 피고1은 원고에게 제2항과 같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15. 9. 16. 피고3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4047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일출하여 버렸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법률행위라 하겠습니까(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피고1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조만간 자신에게 구상금채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 기금과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피고3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권을 일출하였던 것입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사건 구상금채권성립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 9.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4. 3. 14. 피고1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피보전권리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1은 지속된 사업부진으로 원고가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2015. 9. 5.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유발하는 등 원고가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에 의거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이후에 책임재산을 일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해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 원고의 사전구상채권이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사후구상금채권의 성립

원고 기금은 위와 같이 사전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이후 2015. 11. 10. 소의 은행1에게, 2015. 10. 12. 소의 은행2에게 피고1의 대출금채무를 대위 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채권도 취득하였습니다.

다. 무자력

피고1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자신 소유의 담보가치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켜 원고 기금에 대한 등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라. 채무자의 악의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이로 말미암아 원고 기금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심화되게 되어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총 공동담보가 부족하

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약의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마. 취소와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2015.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3은 피고1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15. 9. 16. 접수 제 404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결 론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1 및 피고2에 대하여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나아가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기하고자 본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관할에 대한 의견

본 사건은 신용보증약정 제20조에 의하여 귀원에 합의관할이 있습니다.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충청남도 서산시

임야 318㎡

(공유자 지분 318분의 119 전부)

2. 충청남도 서산시

임야 1076㎡

(공유자 지분 1076분의 331 전부)

3. 충청남도 서산시

임야 1374㎡. 끝.